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4. 27 선고 2022가단5017495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유한회사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2. 3. 30.

판 결 선 고 2022. 4. 27.

주 문

1. 가. 피고와 C(주민등록번호 1 생략)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0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9. 3. 26.에 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한다.

나. 피고는 원고에게 6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소장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근거 :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)

판사 이현종

별지